

녹색기업·기술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금융혜택 녹색인증제 시행과 제도 정착을 위한 효율화 방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 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R&D·수출·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녹색인증제 추진목적

녹색기술은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요소로서 경제성장과 환경의 지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획득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기술·녹색성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지구자원의 유한성과 환경오염의 심각성, 여기에 자국의 산업보호 수단으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려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풀이된다. 화석연료의 가채연수가 원유의 경우에는 약 40년,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약 6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의 발전 여하에 따라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먼 미래 또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당면 과제 중의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 탄소 배출규제와 근거리 주행용 전기자동차 전용도로 확보, 건축물 고효율화 기준 강화, 실시간 전력거래제도 등을 통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노력이 요구된다. 현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를 전제로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수준이

김 용 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인증실장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전략기획팀장, 전문위원실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제품인증실장,
녹색기술인증실장

tel. 02-380-0473 | kyg@keiti.re.kr

2030년까지 선진국 대비 94% 이상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온실 가스는 2020년 까지 1억 2천 9백만 톤을 저감시킨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녹색기술은 요약하자면,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환경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녹색사업·녹색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가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각 업종 별로 기존 추진정책 중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에너지·환경 분야를 핵심 정책으로 재편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환경 및 녹색 관련 기술개발이나 제품·기술의 차별화 등으로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입안 및 과제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맞춰 현 정부가 마련한 녹색인증제의 목적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녹색 기업에게 자금과 금융 지원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일종의 '금융 지원 방안'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녹색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R&D·수출·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 신성장 동력 펀드 투자 등 기업에게 금융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현재 녹색기업과 사업에 대한 여신 우대 및 녹색금융상품 출시가 이미 상당수 되어있는 상황이나, 시중은행권의 지원규모는 아직 미비한 현실이다. 이는 첫째, 지원 자금이 이미 성숙단계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되고 있고 둘째, 민간투자자들이 기업의 녹색 신기술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녹색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근본부터 제고 하고, 유망 녹색기술 및 사업을 명확화하며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녹색인증제를 착수 하게 되었다.

녹색인증제 도입 경위

녹색인증제는 지난 해 7월 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 을 통하여 기본방향이 발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녹색펀드, 녹색채권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녹색금융 세제지원계획을 발표('08. 25)한 바 있다. 기본 방향 발표 이후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총괄작업반을 구성하여 녹색인증 고시(안), 인증절차, 인증체계 등을 마련해왔다. 특히,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을 도출하고 기술별 인증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많은 전문가의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동 내용에 대한 공청회, 지역순회설명회 등이 개최된 바 있다. 녹색인증제는 '10년 1월 13일자로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도 시행의 세부 절차 등을 정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고시('10. 4. 15)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인증대상

녹색인증은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세가지로 분류된다. 녹색기술과 녹색사업은 현장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인증여부가 확정되며,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인증 받은 해당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규모를 검토하여 확인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녹색기술 인증을 먼저 획득하여야 한다.

1) 녹색기술인증

그간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녹색성장을 위하여 수립·추진했던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 성장동력 사업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하여 인증대상 녹색기술을 10대 분야, 60개 중점분야로 정리·고시하였으며, 주요 평가항목은 기술성, 시장성 및 녹색성이다. 기술성은 신청 기술에 대한 핵심 요소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우수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주로 고려하며, 시장성은 국내외 시장규모, 성장률, 수익률,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녹색성은 에너지·자원의 절약,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의 억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2) 녹색사업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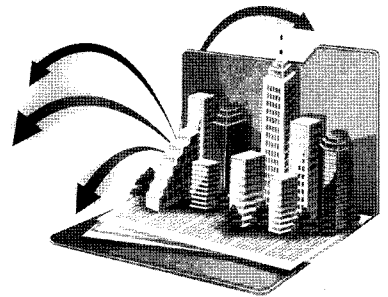
녹색산업 설비, 녹색제품 설치, 녹색기술의 응용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 활동으로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에 인증을 부여한다. 평가항목은 녹색기술 활용성, 환경 기대효과 및 사업타당성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성은 금융권에서도 별도 심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고시된 녹색기술을 활용한 환경기대효과 및 사업타당성이 위주로 평가가 진행된다. 환경기대효과와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어야 하며, 사업 타당성의 경우 정책적 목표와의 부합 여부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인증 대상 사업범위로는 환경보호 및 보전 등 9대 분야의 95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3) 녹색전문기업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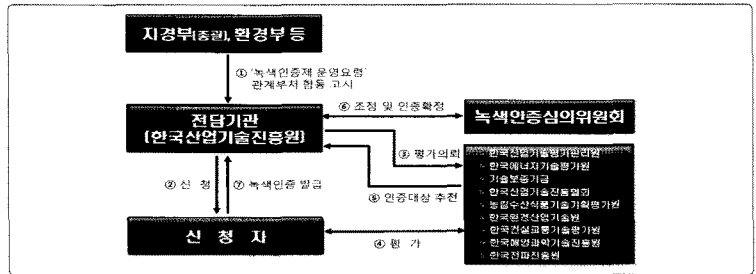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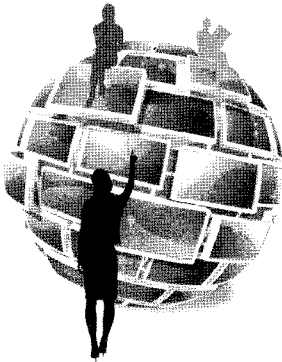
창업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업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을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준다.

인증절차

녹색인증제가 환경부, 지경부 등 부처 공동으로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전담기관)에서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지원하게 된다. 전담기관은 신청서 접수 및 인증서 교부 업무를 담당한다. 신청이 접수 되면 전담기관은 접수된 기술 및 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 부처 산하 9개 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며, 평가기관은 위에 소개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적합성심사(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녹색인증 추천을 하게 된다. 추천받은 기술·사업은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인증여부가 결정되며, 신청부터 최종 인증서 발급까지 처리기한은 45일로 하고 있다.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부처 장관 명의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2년이다. 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되고, 최초 인증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혜택

제도시행 초기임에 따라 녹색펀드,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및 기술보증 관련 보증료 감면 등 일부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 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에 있다.

녹색인증제 정착을 위한 효율화 방안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초기단계로서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대기업 홍보 부족과 정확한 인증범위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우선 해결해야할 정부과제이다. 또한 신청 기업들도 녹색기술 인증 제도를 오해하고 기술범주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합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으며,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이 일단 인증을 획득하고 보자는 식의 신청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타 녹색금융 관련 상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기업들 중 녹색인증 범주에 들어가는 상당수의 업체가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보증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녹색인증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중인 녹색기업 대상 금융상품과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에서 부여 하던 인센티브와 변별력을 갖추면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